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142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강대준, 이정민, 이채영, 장문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변론 종결2022. 11. 9.

판결 선고2023.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0. 7. 2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172,7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2,7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 1) C은 2017. 11. 1.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사용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C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 신용카드사용약정 당시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을 연 23.05%이었다.
- 2) E은행은 2019. 5. 1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 3)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55309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776,746원 및 그중 2,497,400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0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4) 2021. 7. 7.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이 사건 채권의 미지급 원리금은 합계 4,180,650원(= 잔여 원금 2,498,400원 + 2021. 7. 7.까지 발생한 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682,250원) 및 그중 잔여 원금 2,498,400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0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된다.

나. F의 부동산 소유 및 사망

- 1)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18.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5. 23. 채무자를 G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하는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2) F는 2020. 6. 21. 배우자인 G, 자녀들인 C과 피고를 두고 사망하였다.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이후의 등기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7.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 피고가 십수 년 동안 망인의 병원비 및 요양원비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가 망인의 장례비, 제례비, 공양비를 전액 부담한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채무(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 G과 C은 망인에 대한 각각 25,000,000원, 65,000,000원¹⁾ 상당의 채무를 면제 받는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2020. 7. 20. 이루어졌음에도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2020. 6. 20.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여 2020.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2020.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8,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자력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던 반면, 별지 (2)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최소한 원금 기준으로 72,725,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4,172,7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172,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C이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 다른 공동상속인들(G, C)이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사정을 고려하고 자신들이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각각 25,000,000원, 6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데 동의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룬 것이므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한편으로 채무자인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공동상속 시 응당 받아야 할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선해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인 G와 C의 망인에 대한 각 해당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과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례비, 제례비, 공양비 등을 부양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H조합, I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G은 2013. 5. 24. 배우자인 생전의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H조합로부터 받은 90,000,000원의 대출금 중 64,400,000원을 딸인

C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의 병원비 등 합계 52,569,490원3) 을 부담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장례비 등으로 합계 5,506,300원을 지출한 사실(합계액은 58,075,790원이 된다), 2020. 8.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9,890,500원인 사실, 2020. 9. 2.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90,087,630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결국 G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H조합로부터 대출받은 90,000,000원 중 24,600,000원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64,400,000원은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H조합가 망인 생전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아 대출채무자도 아닌 망인이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외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대출명의자도 아닌 망인이 위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명의자이자 남편인 G에게, 나머지 일부를 딸인 C에게 대여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망인이 G과 C에게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일종의 증여라고 못 볼 바 아니다.

④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망인의 생전 병원비 등을 전액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사실상 망인 생전에 병원비 부담 등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생전의 망인을 사실상 전담하여 돌봄으로써 생전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G과 C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들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의도로써 'G과 C의 망인에 대한 채무의 면제'라고 언급하는 한편, 피고가 생전의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전담하기로 한 것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반영하기로 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대출채무자 G)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약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결국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최소한 피고가 망인 생전에 부담한 병원비 등과 망인의 사망으로 지출하게 될 장례비 등의 합계액을 피고의 최소한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협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합계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8,075,790원이다.

⑥ 한편 편의상 망인의 사망일(2020. 6. 21.)과 이 사건 분할협약일(2020. 7. 20.)에 가까운 2020. 8.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309,890,500원과 같은 2020. 9.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0,087,630원을 각각 해당 시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및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보기로 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망의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간주상속재산 = 분할대상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상속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 실제 근저당채무)	219,802,870
공동상속인 중 G의 특별수익	(+)25,600,000
공동상속인 중 G의 특별수익	(+)64,400,000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기여분	(-)58,075,790
간주상속재산 합계	251,727,080

(2) 구체적 상속분

(가)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의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나)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기여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액

(나) 구체적 상속분율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

G	3/7	107,883,034	0	25,600,000	82,283,034	0.374
C	2/7	71,922,023(4) 편의상 반올림하였다.	0	64,400,000	7,522,023	0.034
피고	2/7	71,922,023(5) 편의상	58,075,790	0	129,997,813	0.5926) 편의상 소수점

G	3/7	107,883,034	0	25,600,000	82,283,034	0.374
		반올림하였다.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합계		251,727,080			219,802,870	1

라) 따라서 채무자 C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7,522,023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채무(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I은행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C은 이 사건 분할협약이 없었다면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1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최소한 위 피담보채무의 대출원금 90,000,000원의 2/7에 해당하는 25,714,285원(= 9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채무자 C이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 7,522,023원 상당에 부합하는 소유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순형

별지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C이 받은 금액은 64,400,000원이고 결과적으로 대출명의인인

G이 나머지 25,600,000원을 사용한 셈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에 기재된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망인의 사망일이다.

3)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중 환자부담총액 또는 본인부담총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4) 편의상 반올림하였다.

5) 편의상 반올림하였다.

6) 편의상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